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	19-28
번호	관련

발의년월일: 2019. 3.

발 의 자: 정혜경 외 1명

1. 수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개정에 따른 용어 추가 변경과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부칙의 경과조치를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10조제2항 중 “광고사업자”를 “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”으로 수정

나. 제13조제1항제5호 중 “심의위원회 위원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수정

다. 부칙 추가(수정)

-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추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광고사업자”를 “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5호 중 “심의위원회 위원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<u>광고사업자</u>에 대해서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</p> <p>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심의위원회 위원장</u>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10조(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</u> 등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